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15일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3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경영상태지표관련사항은 서류제출기한을 감안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기준이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시공경험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 또 건설사들의 재무상태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경영상태 평가지표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 비재무항목이 추가되는 등 다원화된다.

이와 함께 턴키·대안입찰시 PQ항목 점수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설계 및 입찰가격점수 비중이 높아지며,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PQ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공사비 1천억원을 기준으로 이원화에 적용하기로 했다.

1천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PQ심사항목 가운데 변

별력이 부족한 기술능력 배점을 35점으로 2점 줄이는 대신 시공경험배점은 32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평가시 단순공사 실적보다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비중을 확대하고 기술자보유 평가에 해당 공종 경험 기술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상태평가시 재무항목 평가지표를 현행 6개에서 9개로 다원화하고 점수비중은 23점으로 낮추는 대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 비재무항목(10점)을 신설하여 업체들의 현재 경영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인도부문에서 우수건설업체에 대해 1점의 가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

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1천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PQ심사항목 가운데 시공경험과 기술능력부문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경영상태부문은 1천억원 이상 공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새로 추가된 비재무항목은 3개 항목 가운데 신용평가등급으로 한정하여 오는 2003년 7월부터 적용하고,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비재무항목의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턴키·대안공사는 업계의 기술능력 제고를 위해 PQ항목 점수비중을 현행 30점에서 20점으로 낮추는 대신 설계와 입찰가격점수를 5점씩 높였다.

■ 주요개정내용

▲ 1천억원 이상 공사

PQ심사항목 가운데 기술능력의 배점을 축소하고 시공경험 비중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배점이 30 : 37 : 33에서 32 : 35 : 33으로 조정됐다.

시공경험평가분야의 경우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의 배점한도가 22점에서 24점으로 조정되고 유사한 공사의 배점한도도 12점에서 14점으로 높아졌으며, 한도 8점이 배정된 최근 5년간 토목·전기·정보통신공사·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에 건축이 추가되었다.

기술능력부문에서는 기술자 보유현황파악시 해당 공사 경험 기술자를 우대하고 설비 및 장비보유 현황은 4점으로, 기타 당해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2점으로 각각 1점을 낮췄다.

경영상태부문에서는 재무항목 평가지표가 다원화되는 대신 평가비중은 33점에서 23점으로 축소되었으며, 재무항목 평가지표는 금감위가 외감법 적용기업 결산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선정한

주요 경영지표를 활용하되 중복되거나 건설업체 평가에 부적절한 지표를 제외한 9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2점), 최근연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3점)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비재무항목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4점),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3점), 영업기간(3점) 등 10점의 한도가 정해졌다.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통한 수시결산업체인 경우 당해 연도말 결산서와 비교해 분식결산으로 밝혀질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 1천억원 미만 공사

시공경험과 기술능력부문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경영상태부문은 1천억원 이상 공사의 기준을 준용한다.

비재무항목은 신용평가등급,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 영업기간 가운데 신용평가등급만 평가하고 시행시기는 2002회계년도(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30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는 비재무항목의 평가는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재무항목으로만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 턴키·대안입찰제도

PQ항목 점수비중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설계 및 입찰가격 점수비중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설계 : PQ : 가격의 평가비중은 40 : 30 : 30에서 45 : 20 : 35로 조정,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된다.

또 적격심사항목 가운데 시공여유율 평가를 재무상태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시공능력공시액 대비 총기성액으로만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실질자본금 및 순유동자산은 경영상태에서 평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행	개정
<p>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3, 2001. 12. 18.)</p> <p>제1조~제6조(생략)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내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30%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제13조(생략)</p>	<p>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4, 2002. 3. 16.)</p> <p>제1조~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의 성질·내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3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제13조(현행과 같음)</p>
<p>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3, 2001. 12. 18.)</p> <p>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 (생략) ② 제5조 별표의 1. (생략) 2. 경영상태 : 합산하여 산정<단서신설></p>	<p>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4, 2002. 3. 16.)</p> <p>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 별표의 1. (현행과 같음) 2. 경영상태 : 합산하여 산정. 다만, 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분야중 비재무항목(신용평가등급,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 영업기간)의 평가는 공동수급체대표자를 기준으로 평가함 3. (현행과 같음) 제15조~제16조(현행과 같음)</p>
<p>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3, 2001. 12. 18.)</p> <p>부칙 ① 이 예규는 200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1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p>	<p>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4, 2002. 3. 16.)</p> <p>부칙 ① 이 예규는 200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1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p>

현 행	개 정
<p>③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한 후 2001.12.19 이후에 실시하는 입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③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사전심사기준중 경영상태부분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해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2. 6.30까지는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2200.04-147-13, 2001.12.18)의 별표에 의한 심사항목 및 배점을, 2002. 7.1부터는 이 예규 별표에 의한 심사항목 및 배점을 적용한다.</p>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 관련)

현 행				개 정			
(신 설)				제6조와 관련한 사전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만, 추정가격이 1천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분야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지1과 같다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 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분야 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계			
1. 시공 경험	30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 전기, 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22 12 8	1. 시공 경험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최근5년간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2. 기술 능력	37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나.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보유(임차포함) 상황 다.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 현황	20 5 5	2. 기술 능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 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분야 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라. 기타 당해공사시공에 필요한 사항 마. 최근년도 건설부분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분 기술개발투자비율					
3. 경영 상태	33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0	3. 경영 상태	33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6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6
		다. 최근년도 고정자산대고정부채 비율 (고정자산/고정부채)	2			다. 최근년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3
		라.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6			라. 최근년도 영업이익대비이자보 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
		마. 최근년도 매출액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매출액)	2			마. 최근년도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3
		바.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5			바.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3
				아. 최근년도 총자산대비영업현금 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3		
				자.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 자산) ÷ 2}]	4		
4. 신인 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우수건 설업자로 지정된 자	+1	4. 신인 도	±3	(현행과 같음)	
		2)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 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 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2				

현행				개정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분야별	배점한도	항목별	배점한도	분야별	배점한도	항목별	배점한도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2) 최근 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1				
		다. 건설재해 및 재재처분사항					
		1)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1				
		3)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1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3				
		마. 최근 1년동안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낙찰제 대상공사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					
		1) 1회 낙찰자	-1				
		2) 통산 2회 낙찰자	-3				
		3) 통산 2회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1점씩 추가감점					
		4) 통산 5회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2점씩 추가감점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분야별	배점한도	항목별	배점한도	분야별	배점한도	항목별	배점한도
		5) 통산 9회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3점씩 추가감점					
		6)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감점 받은 점수도 합산					
<p>(“비고” 및 “주”에 기재된 사항)</p> <p>주 1) 시공경험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항목과 “나”항목은 택일 적용함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사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것에 한함. <p>주 2) 기술능력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및 “다”항목의 설비, 장비, 특수공법 및 기술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력업자로 등록된 하수급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함. 기술개발투자비율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함 <p>주 3) 경영상태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함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업종의 업체결산서로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 				<p>(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성된 결산서로 평가함</p> <p>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p> <p>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 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p> <p>라. "다"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작성시(반기결산서 작성시 포함) <u>총자본회전율</u>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함</p> <p>4. "제2" 및 "제3"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함</p> <p>5. "제3"의 규정의 경우외에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결산서를 작성, 반기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 평가에 한함</p> <p>6.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체결한 기업의 부채총액이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감소한 경우 반기결산서를 작성, 반기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함</p> <p>7. 제4 내지 제6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p>	<p>(현행과 같음)</p> <p>라. _____ ----- <u>자산회전율</u>은 _____ -----</p> <p>4.~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함</p> <p>주 4) 신인도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하되, "마"항목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저가입찰관련 감점은 배점한도에서 제외 2.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4. "마"항목의 평가대상 및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출자기관 등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여 공사이행보증서제출을 의무화한 공사의 경우를 모두 합산하며, 당해공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2001. 7. 2이후)동안 입찰이 실시된 공사를 대상으로 함(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대상) 	<p>주4) 신인도 평가방법</p> <p>(현행과 같음)</p>

[별지 1: 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 공사]

현행				개정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분야별	배점한도	항목별	배점한도	분야별	배점한도	항목별	배점한도
계	100		100	계	100		100
1. 시공 경험	30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22	1. 시공 경험	32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24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12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14
		다. 최근5년간 토목, 전기, 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8			다. 최근5년간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8

현행				개정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목별	배점 한도	분야별	배점 한도	항목별	배점 한도	
2. 기술 능력	37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20	2. 기술 능력	3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 기술자 우대)	20	
		나.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보유(임차포함) 상황	5			나.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보유(임차포함) 상황	4	
		다.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 현황	5			다.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 현황	5	
		라. 기타 당해공사시공에 필요한 사항	3			라. 기타 당해공사시공에 필요한 사항	2	
		마.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4			마.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4	
		3. 경영 상태	33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0	3. 경영 상태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4				
다. 최근년도 고정자산대고정부채비율(고정자산/고정부채)	2	다. 최근년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2				
라.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6	라. 최근년도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3				
마. 최근년도 매출액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매출액)	2	마. 최근년도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2				
바.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5	바.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2				
		사. 최근년도 총자산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1	아. 최근년도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2		
		자.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3	차. 신용평가등급	4		



현행				개정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분야별	배점한도	항목별	배점한도	분야별	배점한도	항목별	배점한도
						가.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	3
						타. 영업기간	3
<p>주 1) 시공경험 평가 방법(생략)</p> <p>주 2) 기술능력 평가 방법(생략)</p> <p>주 3) 경영상태 평가방법</p> <p>1.~6.(생략)</p> <p>(신설)</p>				<p>주 1) 시공경험 평가 방법(현행과 같음)</p> <p>주 2) 기술능력 평가 방법(현행과 같음)</p> <p>주 3) 경영상태 평가방법</p> <p>1.~6.(현행과 같음)</p> <p>7.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기업어음(또는 회사채) 신용평가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AAA이하 A이상) : 4 • B등급(BBB이하 B이상) : 3 • C등급(CCC이하 C이상) : 2 • D등급 : 0 			
<p>8. 제4 내지 제6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함</p> <p>(신설)</p>				<p>8.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은 제4 내지 제6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의견 : 3 • 한정의견 : 2 •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0 			
				<p>9. 영업기간은 건설업체의 최초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이상 : 3 • 20년미만10년이상 : 2 • 10년미만5년이상 : 1 • 5년미만 : 0.5 			

2.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1, 2001. 7. 31.)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2, 2002. 3. 16.)																																																												
제1조~제11조(생략)	제1조~제11조(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0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일반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기술자보유미달)평가는 2001.9.1 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 이 예규는 200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1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심사분야</th> <th>심사항목</th> <th>배점한도</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td> <td>100</td> <td></td> </tr> <tr> <td rowspan="4">당해 공사 수행 능력</td> <td rowspan="2">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td> <td>*PQ심사항목 을 이용</td> <td>70</td> <td></td> </tr> <tr> <td></td> <td>(40)</td> <td></td> </tr> <tr> <td>하도급 관리계획 의 적정성</td> <td>• 하도급 금액 의 적정성</td> <td>(12)</td> <td>•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 인 공사는 배 점한도를 10 점으로 함</td> </tr> <tr> <td>자재 및 인 력조달 가격 의 적정성</td> <td>•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td> <td>(14)</td> <td>• 추정가격이 300억원이 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td> </tr> <tr> <td>시공 여유율</td> <td>• 미기성총액/시 공능력공사액</td> <td>(4)</td> <td>*산정방법 : 아래</td> </tr> </tbody> </table>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 을 이용	70			(40)		하도급 관리계획 의 적정성	• 하도급 금액 의 적정성	(12)	•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 인 공사는 배 점한도를 10 점으로 함	자재 및 인 력조달 가격 의 적정성	•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 추정가격이 300억원이 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시공 여유율	• 미기성총액/시 공능력공사액	(4)	*산정방법 : 아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심사분야</th> <th>심사항목</th> <th>배점한도</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td> <td>100</td> <td></td> </tr> <tr> <td rowspan="4">당해 공사 수행 능력</td> <td rowspan="2">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td> <td>*PQ심사항목 을 이용</td> <td>70</td> <td></td> </tr> <tr> <td></td> <td>(40)</td> <td></td> </tr> <tr> <td>하도급 관리계획 의 적정성</td> <td>• 하도급 금액 의 적정성</td> <td>(12)</td> <td>•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 인 공사는 배 점한도를 10 점으로 함</td> </tr> <tr> <td>자재 및 인 력조달 가격 의 적정성</td> <td>•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td> <td>(14)</td> <td>• 추정가격이 300억원이 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td> </tr> <tr> <td>시공 여유율</td> <td>• 미기성총액/시 공능력공사액</td> <td>(4)</td> <td>*산정방법 : 아래</td> </tr> </tbody> </table>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 을 이용	70			(40)		하도급 관리계획 의 적정성	• 하도급 금액 의 적정성	(12)	•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 인 공사는 배 점한도를 10 점으로 함	자재 및 인 력조달 가격 의 적정성	•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 추정가격이 300억원이 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시공 여유율	• 미기성총액/시 공능력공사액	(4)	*산정방법 : 아래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 을 이용	70																																																										
			(40)																																																										
	하도급 관리계획 의 적정성	• 하도급 금액 의 적정성	(12)	•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 인 공사는 배 점한도를 10 점으로 함																																																									
	자재 및 인 력조달 가격 의 적정성	•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 추정가격이 300억원이 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시공 여유율	• 미기성총액/시 공능력공사액	(4)	*산정방법 : 아래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 을 이용	70																																																										
			(40)																																																										
	하도급 관리계획 의 적정성	• 하도급 금액 의 적정성	(12)	•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 인 공사는 배 점한도를 10 점으로 함																																																									
	자재 및 인 력조달 가격 의 적정성	•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 추정가격이 300억원이 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시공 여유율	• 미기성총액/시 공능력공사액	(4)	*산정방법 : 아래																																																										



현행					개정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비고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비고
		·미기성총액/ 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 순유동자산							
입찰 가격			30	* 평점산식 :아래	입찰 가격				* 평점산식 :아래
<p>주 1) (생략)</p> <p>주 2) 시공여유율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하여 기신고된 최근년도의 국내공사실적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 시공능력공시액은 적격심사시 건설관련법령등에 의하여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을 말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설업체의 경우는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되,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중 가장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 - <u>실질자본금은 기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금액</u> - <u>순유동자산은 기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대차대조표는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결산자료에 의하되,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의하여 수시결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함</u>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평가 -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전업체의 평균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함 - 적용기간 : 익년도 8월1일부터 그 다음에 7월31일까지 <p>주 3) PQ심사항목이용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그대로 적용 					<p>주 1) (현행과 같음)</p> <p>주 2) 시공여유율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하여 기신고된 최근년도의 국내공사실적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 시공능력공시액은 적격심사시 건설관련법령등에 의하여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을 말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설업체의 경우는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되,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중 가장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 - (삭제) - (삭제) · (삭제)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평가 -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전업체의 평균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함 - 적용기간 : 익년도 8월1일부터 그 다음에 7월31일까지 <p>주 3) PQ심사항목이용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그대로 적용 				

현행					개정				
- PQ대상 이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 PQ대상 이외의 공사는 당해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비고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 을 이용	50 (3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하되, 경영 상태의 경우에는 PQ심사항목중 부채비율, 유동 비율, 매출액순 이익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자 산회전율을 이용	50 (30)	
		하도급 관리계획 의 적정성	· 하도급 금액 의 적정성	(10)			하도급 관리계획 의 적정성	· 하도급 금액 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 력조달 가격 의 적정성	·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 력조달 가격 의 적정성	·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 평점산식 : 아래	입찰가격			50	* 평점산식 : 아래
주 1) (생략) 주 2) (생략) 3.~5 (생략)					주 1) (현행과 같음) 주 2) (현행과 같음) 3.~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6. 일괄입찰 · 대안입찰공사					6. 일괄입찰 · 대안입찰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현도	비고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현도	비고
계			100		계			100	
당해			30		당해			20	
공사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 신인도	· PQ심사항목 을 이용	(30)		공사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 신인도	· 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PQ 심사항목을 이용	(20)	
수행					능력				
능력					능력				
능력					능력				
설계			40		설계			45	
평가					평가				
입찰			45	* 평점산식 : 아래	입찰			35	* 평점산식 : 아래
가격					가격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 ·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한다. · 일괄입찰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 / 추정가격) × 30] · 대안입찰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 / 추정가격) × 40] (신설)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5 ×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 ·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함. · 일괄입찰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 / 추정가격) × 35] · 대안입찰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 / 추정가격) × 4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